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0
----------	-----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1.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 2. 15.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9일 상정·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창보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망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보건疫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역할 및 기관별 기능을 규정함.(안 제 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지원기준 및 방법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6년 420백만원 예산 편성 예정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5.10.15. ~ 2015.11.4) 결과 : 의견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정안의 취지

- 낮은 의료보장성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보장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의 의료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한 실정이며, 그나마 의료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의료지원마저 그 지원 정도 및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의료취약계층의 효율적 의료지원을 위한 민간, 공공 협력 체계로 「서울시 안전망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본 제정안이 제안되었음.

2 제정안의 필요성

- 안전망병원 사업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망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의료지원을 하는 민간의료기관(5개소), 시립병원(5개소), 시와의 협약을 통해 2013월 7월에 처음 시작되어 2014년까지 시립병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간 의료기관 등 안전망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망병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위한 제도적 근

거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3 주요사항 검토

가. 총칙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망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안전망병원”을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2가지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조 하위 규정인 가, 나, 다목에서는 3가지 유형의 안전망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불일치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무료)이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규정은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안 제1조1) 목적규정에서 이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야 한다”라고 사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못 박고 있는데 반해,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안전망 병원의 기능 조항(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각 호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3가지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체납 및 무자격,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등 필요의료 서비스 미충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을 첫 번째 기능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안전망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의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에는 이민출국자,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자와 해외 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된 자가 해당되며, 주민등록 말소자에는 사망자까지 포함되므로,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다. 진료비용 산정 기준(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에는 시립병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용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운영규정 보다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같은 조항에서 “진료수가 및 약가”를 “진료수가등”으로 약칭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조항 이외에는 “진료수가 및 약가”에 대한 사항이 더 이상 명시되지 않아 약칭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라. 진료비용 감면 규정(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은 진료비용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의 문장 서술이 간결하지 못하고 모호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을 보다 단순화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임
- 또한 같은 조항에서 “시립병원”은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정의한 바,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자문의 전문성이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사후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칫 시장의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

마. 기타 조항

- 한편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조항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5개의 호를 명시하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를 제시하는 등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등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90
----------	-----------

제안년월일 : 2016년 2월 2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의 체계와 규정 형태에 관한 기준'과 '법령문자 작성의 원칙'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표현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역할 및 기관별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지원기준 및 방법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민간의료기관(무료)”를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서울특별시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와”를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강보험 장기체납 및 무자격,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등 필요의료 서비스 미충족 취약계층”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통합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를”을 “보

건,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는 제5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안전망병원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에”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를 “진료수가 및 약가”로 하고, “등은 시립병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용을”은 “등의 진료비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감면에 따른 진료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안 제10조 중 “중앙정부”는 “국가”로 하고, “민간법인·단체”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다. (생략)</p> <p>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u>민간의료기관(무료)</u>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p> <p>가.~다. (생략)</p>	<p>제2조(정의) <원안과 동일></p> <p>1. <원안과 동일></p> <p>2. <원안과 동일></p> <p>가.~다. <원안과 동일></p> <p>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u>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u>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p> <p>가.~다. <원안과 동일></p>
<p>제3조(<u>서울특별시</u>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u>재정적, 행정적</u>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3조(<u>시장</u>의 책무) ① <원안과 동일></p> <p>② <원안과 동일></p> <p>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u>재정적, 행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조(협약 및 지정) ① <u>공공보건의료와</u>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협약 및 지정) ① <u>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u>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원안과 동일></p> <p>③ <원안과 동일></p>
<p>제5조(기능) ① (생략)</p> <p>1. <u>건강보험 장기체납 및 무자격,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등 필요의료 서비스 미충족 취약계층</u>에 대한 의료공급</p> <p>2.-3.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통합적으로</u> 보건, 의료,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p> <p>3.-4. (생략)</p> <p>6.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타 사업</p> <p>③ (생략)</p>	<p>제5조(기능) ① <원안과 동일></p> <p>1. <u>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으로서</u> 규칙으로 정한 자에 대한 의료공급</p> <p>2.-3. <원안과 동일></p> <p>② <원안과 동일></p> <p>1. <원안과 동일></p> <p>2. <u>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u> 지원하는 사업</p> <p>3.-4. <원안과 동일></p> <p>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타 사업</p> <p>③ <원안과 동일></p>

원 안	수 정 안
<p>1.~2. (생략)</p> <p>제6조(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본원칙) ① (생략) ② 시장은 <u>안전망병원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7조(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② <u>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 입원료, 비급여 수가 등은 시립병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용을 산정한다.</u></p> <p>제8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u>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초회 의뢰된 자로서 중증, 응급, 급성기 치료 및 입원, 정밀검사(이하 “진료”라 한다) 시행 환자 나. 시립병원으로 초회 의뢰되어 진료가 완료 되었으나 2차 입원이 발생한 환자. 다만, 다른 질병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된 자로서 2차 진료 또는 3차 입원이 요구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질병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u>제1항 각호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기준을 마련한다.</u></p> <p>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u>중앙정부 및 자치구, 민간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1.~2. <원안과 동일></p> <p>제6조(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본원칙) ① <원안과 동일> ② 시장은 <u>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 병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7조(비용 산정기준) ① <원안과 동일> ② <u>진료수가 및 약가, 입원료, 비급여 수가 등의 진료비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u></p> <p>제8조(감면) ① 시장은 <u>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p> <p>2. <삭제></p> <p>② <u>시장은 감면에 따른 진료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u></p> <p>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u>국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u>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 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
 - 다. 그 밖에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사업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및 지정)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립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자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3. 영유아 및 아동, 모성, 응급, 재활, 정신질환, 감염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사업
 4.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타 사업
- ② 안전망병원으로서 시립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의뢰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구축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타 사업
- ③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의 지원 사업

제6조(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본원칙) ① 안전망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운영 및 투명한 재정운용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산정기준) ① 안전망병원을 통하여 공공의료를 공급받은 자는 해당 진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진료수가 및 약가, 입원료, 비급여 수가 등의 진료비용은 「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감면에 따른 진료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안전망병원
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망병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자
치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